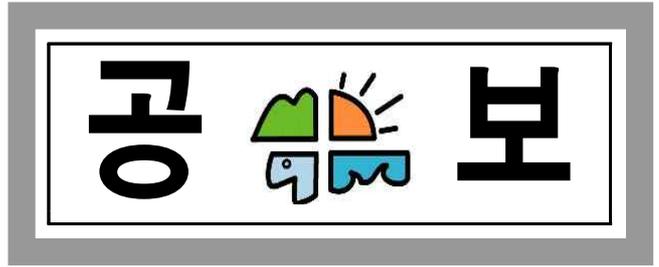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44호 2021년 9월 3일(금)

공 고

- 2021년 다목적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2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동 주민센터 이동식 클린지킴이 (CCTV) 설치 행정예고 5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클린지킴이) 추가설치 행정예고 8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1
-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 공고 13

입법예고

-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2021년 다목적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속초시 다목적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27.

속 초 시 장

1. 사 업 명 : 2021년 다목적 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 속초시 관내 다목적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각종 사고예방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장소

연 번	주 소	세부장소	비 고
1	조양동 1571-1	아프리움 인근 공원	2개소
2	동명동 450-53	구월파크 인근 주택가	
3	금호동 489-507	대형주차장 옆 주택가	
4	청호동 1047	설악대교 하단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6. 공고기간 : 2021. 8. 27. ~ 2021. 9. 15.(20일간)

7. 공고방법 :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처 : 속초시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우)24899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 1길 4

- 전화 / 팩스 : ☎ 033)639-3805 / FAX 033)631-748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동 주민센터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동 주민센터 이동식 클린지킴이(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일

속 초 시 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사전 예방·계도 및 단속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1. 8. 31. ~ 2021. 9. 22.
4. 공고방법 : 강원도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5. 설치대수 : 13대
 - 관할 동별) 영랑동 1대, 동명동 4대, 교동 2대, 노학동 3대, 조양동 2대, 청호동 1대

6.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20m 및 24시간 연속촬영

7. 설치지역 : 속초시 관내 상습무단투기 지역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으로 2021. 9. 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라. 보내실곳 :

우편)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팩스) 033-639-259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033-639-2136)

속초시 공고 제2021 - 926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감시카메라(클린지킴이) 추가 설치 행 정 예 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클린지킴이(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0일

속 초 시 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사전 예방·계도 및 단속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1. 8. 30. ~ 2021. 9. 19.(20일간)
4. 공고방법 : 강원도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
5. 설치대수 : 이동식 CCTV 5대
6.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20m 및 24시간 연속촬영
7. 설치지역 : 속초시 관내 상습무단투기 지역

【 이동식 】

가. 설치대수 : 5대

나. 설치장소

행정동	대수	소재지	비고
합계	5		
동명동	2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13-157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3	
조양동	2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482-1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12-14	
청호동	1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550-17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환경위생과)으로 2021. 9.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639-2386)

라. 보내실 곳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속초시청 환경위생과(033-639-2335)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 클린지킴(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지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 클린지킴이(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03일

속 초 시 장

-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 나. 도로위치 : 속초시 노학동 산 297-40번지, 1073-150번지
- 다. 공고방법 : 속초시공보, 홈페이지,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 라. 공고기간 : 2021. 9. 3. ~ 2021. 9. 17. (14일간)
- 마. 도로 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허가 통보일)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297-40	임	348	290	정원교	노학동 1073-2 외 2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2021-건축과-신축허가-64 (2021년 08월 27일)	
	1073-150	전	385	178			

- 마.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 바. 관계도서 :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사. 문의사항 :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457)

공 고

「속초시 공인 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속 초 시 장

1. 공인 폐기 사유

— 통합인증기 신규 구입 및 기존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등록 및 폐기

2. 공인명 및 인영 : 4개

구분	공 인 명	인영	규격	사용일 또는 폐기일 (최초사용일)	비고
신규 등록	속초시장인 조양동인증기전용3호		3.0×3.0cm	2021. 9. 3.	
신규 등록	조양동장인 조양동인증기전용3호		2.4×2.4cm	2021. 9. 3.	
재등록	조양동장인 조양동인증기전용		2.4×2.4cm	2021. 9. 3.	
폐기	조양동장인 조양동인증기전용		2.4×2.4cm	2021. 9. 3. (2015. 6. 26.)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속초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결산 수행을 위한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시기(3월⇒2월) 개정(안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23. (목)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연락처 : 전화(033-639-2226), 팩스(033-639-234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33-639-2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3월”을 “2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u>3월</u>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 ----- ----- ----- <u>2월</u> ----- -----.</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부칙 <제17389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